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9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김대식ㆍ김상훈ㆍ김정재

김예지 · 김선교 · 박덕흠

서지영 • 이만희 • 조경태

조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 치 등 산불의 예방·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또한 산불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봄철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시기별 풍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수립된 산불방지대책과수종, 임목밀도, 과거 산불 발생 위치·시기·피해면적 등과 연계하여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방법으로 산불에 대비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산불취약지역을 정의·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법률 제 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9호의2 신설).
- 나.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기초조사에 따라 산불 발

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역 알림 표지의 설치, 입산통제, 임도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3 신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17 조의3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연구·조사"를 "연구·조사 및 숲가꾸기(풀베기, 솎아베기 등)"으로 한다.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산불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3(산불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 호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 불취약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알리는 표지의설치, 입산통제, 임도의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그 밖에 산불취약지역의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16조(산불 예방 등) <u><신 설></u>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산림청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을 위		
	하여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ㆍ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		
	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		
	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u>마런하여야 한다.</u>		
<u>①</u> ~ <u>④</u> (생 략)	<u>②</u> ~ <u>⑤</u> (현행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u>⑥</u>		
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			
한 <u>연구·조사</u> 등 농림축산식	-연구・조사 및 숲가꾸기(풀베		
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u>기, 솎아베기 등)</u>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

제17조의2(산불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가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단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산불취약지역의 지정

<신 설>

및 해제)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장은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입산통제,임도의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 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그 밖에 산불취약지역의 지 정·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